

입 법 예 고

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2025. 12.

농 립 축 산 식 품 부
(농축산위생품질팀)

1. 개정이유

농산물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업무 정지에 관한 처분기준 중 중요 변경 사항 미신고 처분기준 규제를 완화하여 인증기관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농산물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 취소, 우리관리인증 업무의 정지 및 우수관리시설 업무 정지에 관한 처분기준 중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중요사항 변경사항을 미신고 행반행위(1건, 2건 이상)를 나누어 처분 하던 것을 미신고한 경우(건수 구분 폐지) 처분하도록 개정하여 농산물 우수관리인증기관 관리의 효율화가 기대됨(안 별표 4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의 : 관계부처 합의 완료

라. 기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4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라. 법 제9조제2항 본문에 따른 중요 사항, 조직·인력 및 시 설 중 어느 하나가 변경되었으 나 1개월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우수관리인증 또는 우수관리시설의 지정 업무를 계속한 경우	법 제10조 제1항제4호	경고	업무정지 1개월	업무정지 3개월
--	------------------	----	-------------	-------------

별표 4 제2호1) 및 2)를 각각 삭제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				개정안				
[별표 4]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 취소, 우수관리인증 업무의 정지 및 우수관리시설 지정 업무의 정지에 관한 처분기준					[별표 4]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 취소, 우수관리인증 업무의 정지 및 우수관리시설 지정 업무의 정지에 관한 처분기준				
1. (생략)					1. (현행과 같음)				
2. 개별기준					2. 개별기준				
위반행위	근거 법조 문	위반횟수별 처분기준			위반행위	근거 법조 문	위반횟수별 처분기준		
		1회	2회	3회 이상			1회	2회	3회 이상
가. ~ 다. (생략)					가. ~ 다. (현행과 같음)				
라. 법 제9조제2항 본문에 따른 중 요 사항에 대한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우수관리인 증 또는 우수관 리시설의 지정 업무를 계속한 경우	법 제1 0조 제1 항제4 호				라. ----- -----중 요 사항, 조직· 인력 및 시설 중 어느 하나가 변 경되었으나 1개 월 이내에 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	법 제1 0조 제1 항제4 호	경고	업무 정지 1개월	업무 정지 3개월
1) 조직·인력 및 시설 중 어느 하 나가 변경되었으 나 1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		경고	업무 정지 1개월	업무 정지 3개월	1) < 삭제 >				
2) 조직·인력 및 시설 중 둘 이상 이 변경되었으나 1개월 이내에 신 고하지 않은 경 우		업무 정지 1개월	업무 정지 3개월	업무 정지 6개월	2) < 삭제 >				
마. ~ 차. (생략)					마. ~ 차. (현행과 같음)				